탄원서

제1심 · 개별 책임의 신중한 판단과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시민 탄원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69
피고인	조우연
관련 사건	제1심 · 관저 이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중 조우연 피고인 부분
탄원 취지	피고인 개인의 실제 행위·인식·거래 경위와 직무관련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법정에서 확인되는 양형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저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금품 제공 의혹을 지켜본 시민으로서 조우연 피고인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공직 수행의 청렴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위법행위가 증명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합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다른 피고인의 행위가 조우연 피고인의 책임을 대신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고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주시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벌의 무게가 그 책임을 넘어서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우연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물품 구입·교환과 자금 정산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전문, 공판조서, 관련 금융거래와 매장 원본 자료도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에서는 특검의 기소 내용과 피고인 측의 반박을 확정된 사실처럼 옮기지 않고, 재판부께서 이미 확보한 증거를 어떤 순서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신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전체적인 의혹과 조우연 개인에게 귀속되는 행위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대통령 관저 위치·업체 선정과 공사 계약, 관련자의 직권 행사, 건설업 명의 사용, 금품 제공과 수수 등 서로 다른 행위와 죄명이 함께 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같은 공사 과정에 등장한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 배경 자체로 조우연 피고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우연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구별해 주십시오.

조우연 피고인이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배우자라는 점은 사람들 사이의 연락이나 자금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만으로 회사의 사업상 판단, 공사비 협의, 물품 제공의 의사 결정을 모두 함께 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구매와 교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그 행위 역시 혼인 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고 정확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우연 피고인의 행위 시점, 방식, 의사 결정과 인식입니다.

2. 디올 약 688만 원과 샤넬 차액 약 324만 원을 각각 별도의 사실관계로 살펴 주십시오

특검은 2022년 5월 디올 의류·벨트·팔찌 등 약 688만 원 상당의 물품 제공과, 같은 해 7월 샤넬 제품 교환 때 약 324만 원의 추가 대금 부담을 문제 삼아 합계 약 1,012만 원 상당의 금품 제공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기소 내용에 관한 설명이지 법원에서 조우연 피고인의 자기 자금 제공이 전액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거래는 형식부터 다릅니다. 5월 거래는 새로운 물품의 구매와 인도에 관한 문제이고, 7월 거래는 이미 보유한 샤넬 제품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차액의 부담 문제입니다. 구매 명의인, 결제 수단 명의인, 카드 대금·계좌 자금의 실제 출처, 물품을 요청하거나 선택한 사람, 결제 이후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확정해야 금품 제공의 주체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의 금액이 보도된 대로 인정된다면 1회 100만 원 초과라는 법률상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단순 합계로 개인별 제공 행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어떠한 권원으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동일인·동일 회계연도 요건과 해당 제재 규정을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2022년 각 행위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과 제재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주십시오

이 사건의 행위 시점은 2022년 5월과 7월입니다. 5월 당시에는 2021년 12월 16일 시행 법률 제18581호가, 7월 당시에는 2022년 6월 8일 시행 법률 제18576호가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두 시점의 시행 법률 판본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개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금품 제공의 구성요건이나 제재가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조와 제22조·제23조 및 부칙을 각각 확인하여 범행 당시의 법률을 정확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에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제2항은 그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받는 경우를 규율하며, 제5항은 그러한 금품의 제공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직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금액만으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제공자에게 어떠한 형사벌이나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제22조 제1항 제3호와 제23조 제5항 제3호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분리해야 합니다. 공직자 배우자 자신에 대한 법률상 제재의 구조와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재의 종류와 금액 기준을 혼동하지 않고 조우연 피고인에게 특정된 공소사실에 맞추어 적용해 주십시오.

4. 정당한 거래 관계와 대리구매의 실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리구매라는 설명이 존재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넘어서, 구입 전에 실제 대리구매 부탁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물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대금을 정산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정산이 약정대로 이행되었는지입니다.

다만 정산 내역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거래의 정당성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목적이나 경제적 실질이 금품 제공이었다면 사후의 송금 형식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타인의 부탁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외관상 결제 행위만을 근거로 그 대금 전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처럼 취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김건희 측 변호인은 2026년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디올 물품은 대리구매였고 구매대금을 정산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별도로 2025년 말 보도에는 2022년 5월 17일 무렵 김태영 대표 계좌에 약 7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는 내용과 조우연 피고인이 대리구매 후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정산'이라는 설명과 '다음 날 무렵 입금'이라는 보도가 가리키는 정확한 거래가 같은 것인지는 원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김건희 측의 설명을 조우연 측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인정한 사실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계좌거래 원본과 카드 승인·청구 내역, 구매 영수증 및 물품별 내역을 결합하여 송금인과 수취인, 각 시각, 물품 인도 시점, 약 688만 원과 700만 원의 차이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 입금이 디올 구매의 정산인지, 복수 거래를 함께 처리한 것인지, 구매 전후에 대리구매 의사가 실제 존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입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거래의 경위와 정당한 권원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정산 주장을 7월 샤넬 차액에 그대로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5. 2022년 5월 16일 공사비 협의와 디올 구매 정황을 불리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2022년 5월 16일 오전 21그램 측과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사이에 관저 공사비 관련 회의가 있었고, 같은 날 21그램 대표 측이 디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는 구체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구매·제공 시점을 5월 중순에서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5월 16일 회의와 구매를 연결하는 특검 측의 문제 제기를 회피하지 않되, 법정에서 제출된 영수증과 회의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시간·참석자·결제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예산 또는 공사비에 관해 협의하던 시기에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고가 물품이 전달되었다면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께서는 회의자료와 참석자 진술, 구매 영수증·카드 승인 시각, 구매 전후의 대화 및 물품 전달 경로를 함께 살펴 주십시오. 그 자료가 공사 관련 편의를 기대한 제공 목적을 뒷받침한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우연 피고인이 공사비 협의와 사업상 이해관계를 얼마나 알았는지, 누가 물품 구매를 요청하거나 결정했는지,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는 별도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의와 구매 시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의혹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6. 2022년 7월 샤넬 교환 차액의 성격과 조우연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주십시오

2022년 7월 샤넬 제품 교환 과정에는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씨와 조우연 피고인이 동행한 것으로 보도됐고, 조우연 피고인은 샤넬 매장 고객 자격으로 교환을 도왔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이나 고객 자격만으로 324만 원의 추가 대금이 대납인지, 최종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인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샤넬 물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관한 별건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인 법정 진술이 존재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다른 사건의 공판에서 조우연 피고인은 추가금 324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먼저 결제했으며 유경옥 씨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2~3주 뒤 남편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금 반환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카드 결제 자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동시에 현금 상환 주장도 입증되기 전의 피고인 측 진술로 다루어야 합니다.

유경옥 씨와 조우연 피고인 사이의 연락 기록, 교환 당시의 카드 전표, 사건 당시 현금 인출 또는 보유 내역, 남편 김태영 대표의 현금 수령·전달 경위, 당시의 메시지와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현금 거래라서 계좌 기록이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객관적 정산 자료가 없다는 증거상 한계는 모두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5월 디올 거래의 700만 원 송금 주장을 7월 샤넬 거래의 정산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직무관련성은 대통령 직무와 관저 공사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심리하여 주십시오

수령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의 직무관련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이 물품 구매나 공사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는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시 공적 직무의 범위, 관저 공사의 승인·계약·예산·감독 구조, 업체의 이해관계와 물품 제공 당시의 의사연락을 종합해야 합니다. 구체적 청탁이나 대가 약속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엄격히 판단해 주십시오.

공사 수주 및 공사비 조정에 관한 특검의 의혹이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된다면 해당 직무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상의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조우연 피고인이 두 거래를 어떤 취지로 실행·관여했는지는 서로 다른 증명 대상입니다. 공직의 청렴성을 위한 규제를 좁혀 해석하지 않되, 어느 시점의 어떤 증거가 개별 제공 행위와 연결되는지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판부께서 친분의 존재, 업체에 대한 사업상 기회, 공직 수행과의 연결, 실제 금품 제공을 각기 다른 사실 판단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과 증거를 기초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원칙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조우연의 실행행위와 인식·공모 범위는 김태영 대표와 분리하여 주십시오

조우연 피고인과 김태영 대표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계약 관련 이해관계나 공사비 협의에 관한 정보를 똑같이 공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우연 피고인이 상품을 구매·전달하는 행위에 관여했는지, 그 결정을 독자적으로 했는지, 대표나 다른 관계자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그때 금전 거래의 법적·경제적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각각 살펴 주십시오.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를 검토할 때 단순히 법 조문이나 금지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것과, 자신의 행위가 어떤 거래이고 어떤 상대방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지를 인식했는지를 묻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 않지만, 다른 피고인이 사업상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우연 피고인도 같은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모가 문제 된다면 피고인 간의 의사연락과 역할 분담, 사전의 협의·승낙, 개별 실행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금 출처, 구매 시각,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카드의 실제 사용자, 동행자의 진술 등이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 피고인의 직접 실행이나 의사 결정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도 회피하지 않되, 단순한 부부 관계나 주변 인물의 행위로 빈 부분을 메우지 않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9. 2026년 11월 20일 관저 공사 별건 1심 판결의 의미를 한정하여 주십시오

2026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관저 공사 계약과 시공 관련 별도 사건에서 김오진 전 차관 및 황승호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태영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권남용·사기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한 유죄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과 피고인, 죄명이 다른 별개의 1심 판결이며 아직 그 내용 전체를 판결문 원문으로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별건 판결에서 판단한 업체의 자격이나 공사 경위가 이번 재판의 자료로 제출된다면, 해당 사실이 조우연 피고인의 물품 구매·교환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증거조사와 반박 기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유죄라는 결론 자체가 조우연 피고인의 금품 제공 행위와 고의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별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금품 제공 혐의가 모두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0. 판례는 사실관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대법원 2023년 9월 14일 선고 2023도6767 판결은 수행비서가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개인 비용을 정산받은 경우의 청탁금지법 적용을 다룹니다. 이 사건과 당사자·수수의 상대방·거래 목적이 다르므로 직접 유사 판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권원, 금품의 사용 목적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 방법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물품이 전달되었다는 외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수수 금지 금품의 의미와 예외 사유를 실제 거래 관계에 따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의 문장 일부만을 떼어 내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률상 한계를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증거의 신빙성과 개인별 형사책임의 범위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 역시 증거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금품 제공 혐의를 가볍게 다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원본과 관계인 진술, 금융자료가 서로 어느 범위에서 맞물리는지 성실히 살펴 달라고 청합니다.

디올 거래는 5월 16일의 회의·구매·물품 전달과 5월 17일 무렵의 700만 원 입금 보도를 일치시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샤넬 거래는 324만 원 카드 결제와 2~3주 뒤 현금 반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각 거래에 대해 직무관련성, 조우연 피고인의 관여와 인식, 정당한 권원 여부를 따로 판단해 주십시오. 당사자에게 유리한 계좌 기록과 불리한 메시지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를 살펴본 뒤에도 범죄의 필수 구성요건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부분은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다른 피고인의 행위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까지 조우연 피고인의 형벌에 더해지지 않도록, 인정된 행위와 실제 책임의 범위에 맞추어 형을 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 결론: 개별책임의 신중한 판단과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공적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엄정하게 심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정함은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살피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저의 탄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면책을 구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조우연 피고인 한 사람의 행위와 책임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우연 피고인이 물품의 구매와 교환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담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거래를 기획하고 주도하였는지 아니면 제한적인 부탁이나 실무에 관여하였는지 등 법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구별해 주십시오. 형법 제51조에 따른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피고인 개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된 책임에 비례하는 관대한 형을 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잘못이 입증되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처벌의 수위는 사회적인 비난의 크기만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여 범위가 제한적이었거나 사건 전후의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사정을 양형에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엄정함과 관용이 조화를 이루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선행이나 반성, 가정형편을 내세워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번의 형사판결이 한 사람의 삶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부디 증거와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하시되, 피고인 자신의 책임에 비추어 관대한 처분이 가능한지 마지막까지 살펴 주십시오.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한 시민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 탄원드립니다.

2026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